# 장학 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 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학칙 제14장에 의거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1. 3 .9.)

**제 2조 (적용범위)** 장학관리는 따로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## 제 2 장 장 학 위 원 회

**제 3조 (목적)**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 및 환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장학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**제 4조 (구성)**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이,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이 겸임하고 위원은 기획처장, 교무처장, 재무처장, 입학처장 및 단과대학장과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학생대표 위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11. 3. 1, 2012. 11. 1, 2015. 5. 1, 2020. 1. 28., 2020. 9. 8.)

**제 5조 (기능)**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 (개정 2012. 11. 1)

1.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
2. 장학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
3.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요건, 수혜기간 및 지급기준액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
4.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5. 국가장학금 운영 및 지급에 관한 사항
6. 기타 필요한 사항

**제 6조 (위원장의 권한)** 위원장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괄한다.
2. 위원장의 유고시나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 6조의2 (장학사정관제)** ① 맞춤형 장학정보 제공과 상담 및 면학지원을 위하여 장학사정관제를 운영한다. (신설 2012. 11. 1)

② 장학사정관은 학생처장이 추천하는 교직원으로 한다. (신설 2012. 11. 1)

③ 장학사정관은 교내외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. (신설 2012. 11. 1)

## 제 3 장 장 학 금 지 급

**제 7조 (지급대상)** 본 대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

1.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
2. 재학생중 학업성적 우수자
3. 가정사정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(개정 2021. 3 .9.)
4. 본교 전임교원, 정규직원(무기 계약직 포함)의 배우자 또는 직계자녀(개정 2021. 3 .9., 2023. 3. 1)
5. 본교 전임교원, 정규직원(무기 계약직 포함)으로써 재직 중 사망한 자의 직계자녀(개정 2021. 3 .9., 2023. 3. 1)
6. 국가유공자 등 법률규정에 명시된 자
7. 근로, 봉사 및 간부학생 (개정 2012. 11. 1)
8. 국가와 학교발전에 공헌한 자 및 직계자녀

9. 각 학과·학부 교수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(개정 2021. 3 .9.)
10. 신앙심이 독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
11. 산학협동 공로자 및 직계자녀
12. 특별한 선행이 있는 자
13.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자
14. 체육특기자로서 전국규모대회에서 수상한 자 (개정 2012. 11. 1)
15. 기타 학생처장 또는 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(개정 2012. 11. 1)
16.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학생을 추가 선발하거나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. (신설 2012. 11. 1)

**제 8조 (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)** ① 장학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[별표]에 따른다. (개정 2012. 11. 1, 2015. 3. 2, 2016. 3. 2. 2017. 3. 1, 2018. 3. 1, 2019. 3. 1, 2020. 1. 28., 2020. 3. 1., 2022. 3. 1., 2023. 3. 1., 2024. 4. 1.)

1. ~ 14. <삭제 2012. 11. 1>

② [별표]에 명시되어 있는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. (신설 2020. 1. 28., 2020. 3. 1.)

**제 8조의 2 (기타장학)** 장학금 지급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장학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 (신설 2012. 11. 1)

**제 8조의 3 (교외장학금)** 교외장학금은 해당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선발하여 지급하며,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본 규정을 준용한다. (신설 2012. 11. 1)

**제 9조 (지급정지 및 취소)**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단,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 (개정 2019.10.28)

1. 미등록 휴학·자퇴 및 제적된 자(개정 2021. 3 .9.)
2. 직전학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
3. 학칙을 위배하여 징계처벌을 받은 학생 (개정 2019.10.28)
4. <삭제 2012. 11. 1>
5.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(단, 총장장학금은 제외) (개정 2012. 11. 1)
6. <삭제 2012. 11. 1>
7. <삭제 2021. 3 .9.>
8. 기타 장학제도의 목적달성에 희망이 없다고 총장이 인정하였을 때
9. 1학기 이상 연속 지급되는 장학의 경우 수혜기간동안 기준 성적 미달시(별표기준) (신설 2012. 11. 1, 개정 2013. 10. 1)

**제10조 (장학금지급원칙)** 장학금 지급원칙은 다음과 같다.

1. 지급기간 : 장학금 지급기간은 1학기로 한다.
2. 지급액 : 장학금 지급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.
3. <삭제 2012. 11. 1>
4. 지급한도 : 장학금의 지급한도는 [별표]에 따른다.(개정 2011. 3. 1, 2012. 11. 1., 2021. 3 .9.)
5. 장학금 지급방법 : 장학금은 감면 또는 은행 계좌입금으로 한다. (개정 2012. 11. 1)
6. <삭제 2012. 11. 1>
7. 1학기 이상 연속 지급되는 장학의 경우 수혜기간동안 교내 타 성적장학과 이중수혜 불가하며, 상위장학(수혜금액 상위)만 수혜가능하고, 연속장학 횟수에 포함된다.(신설 2012. 11. 1, 개정 2013. 10. 1, 2016. 3. 2., 2021. 3 .9.)
8. 총장 A장학금 추천 해당자가 없을 경우, 총장 B장학금 추천 배정인원 1명 추가 배정 한다. (신설 2015. 3. 2)

9. 동점자 처리 기준은 따로 정한다. (신설 2015. 3. 2)

**제11조 (장학금의 환수)**

①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가 학적변동 등으로 인한 반환사유 발생 시 반환 기준에 의거 장학금을 환수 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에 따라 환수한다.

1.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
   (단, 생활지원 또는 대가성 장학금 제외)
2. 장학금 지급기준 미달 등 반환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
3. 기타 반환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

[본조신설 2021. 3 .9.]

**부 칙**

①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③ 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7년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종전 규정에 의거한 연속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종전 규정에 의거한 연속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3. 2)

이 규정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3. 1)

이 규정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단, 신입생 장학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 종전 규정에 의거한 연속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(2018. 3. 1)

이 규정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3. 1)

이 규정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10.28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1. 28)

① **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**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 **(경과조치)** 종전 규정에 의거하여 기지급된 장학금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(2020. 9. 8.)

① **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**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벤처 프런티어 장학금의 지급 대상자는 졸업 시 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>(개정 2016. 3. 2, 2017. 3. 1, 2019. 3. 1, 2020. 1. 28., 2020. 3. 1., 2021. 3 .1., 2022. 3. 1., 2023. 3. 1., 2024. 3. 1.)

## 1. 교내장학금: 신·편입생

| 장학 명칭 | 지급대상 | 지급기준 | 지급액 | 지급 구분 | 지급 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총장Ⅰ | 수능시험에서 국어/수학/영어 3개 과목 합이 6등급 이내인 자 | 계속지급조건: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3.5이상<br>※계속지급조건 미충족시 지급탈락<br>※2회 탈락 시 장학금 지급종료 | 등록금 전액 | 등록금 범위내 | 4년 |
| | | | 도서지원비 (연간160만원) | 등록금 범위외 | |
| | | | 생활관비 (4인실 기준) | 등록금 범위외 | |
| 총장Ⅱ | 수능시험에서 국어/수학/영어 3개 과목 합이 8등급 이내인 자<br>※모집단위별 입학정원 10%이내 | 계속지급조건: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3.5이상<br>※계속지급조건 미충족시 지급탈락<br>※2회 탈락 시 장학금 지급종료 | 수업료 50% | 등록금 범위내 | 4년 |
| | | | 도서지원비 (연간80만원) | 등록금 범위외 | |
| | | | 생활관비 (4인실 기준) | 등록금 범위외 | |
| 지역 우수 인재Ⅰ | 지역고등학교(충청/대전/세종) 출신자로서 우리대학 학생부 반영방법에 의한 평균석차 등급이1.00-1.99인 자<br>(단, 국/영/수 합 55시수 이상) | 1)적용전형: 학생부/면접/지역학생/실기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<br>※단, 검정고시지원자 제외<br>2)계속지급조건: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3.5이상<br>※계속지급조건 미충족시 지급탈락<br>※2회 탈락 시 장학금 지급종료 | 등록금 전액 | 등록금 범위내 | 4년 |
| | | | 도서지원비 (연간80만원) | 등록금 범위외 | 4년 |
| 지역 우수 인재Ⅱ | 지역고등학교(충청/대전/세종) 출신자로서 우리대학 학생부 반영방법에 의한 평균석차 등급이2.00-2.49인 자<br>(단, 국/영/수 합 55시수 이상) | 1)적용전형: 학생부/면접/지역학생/실기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<br>※단, 검정고시지원자 제외<br>2)계속지급조건: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3.5이상<br>※계속지급조건 미충족시 지급탈락<br>※2회 탈락 시 장학금 지급종료 | 수업료 50% | 등록금 범위내 | 4년 |
| 수시 수석 | 모집단위별 수석 | 1)적용전형: 학생부/면접/지역인재/실기<br>※ 단, 검정고시 지원자 제외<br>2)계속지급조건: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3.0이상<br>※계속지급조건 미충족시 지급종료 | 수업료 50% | 등록금 범위내 | 1년 |
| 수시 우수 | 모집단위별 상위 10%이내 | 적용전형: 학생부/면접/지역인재/실기/호서인재<br>※단, 검정고시 지원자 제외 | 수업료 50% | 등록금 범위내 | 1학기 |
| 정시 수석 | 모집단위별 수석 | 1)적용전형: 수능/면접/실기<br>2)계속지급조건: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3.0이상<br>※계속지급조건 미충족시 지급종료 | 수업료 50% | 등록금 범위내 | 1년 |
| 정시 우수 | 모집단위별 상위 10%이내 | 적용전형: 수능/면접/실기 | 수업료 50% | 등록금 범위내 | 1학기 |

| 장학 명칭 | 지급대상 | 지급기준 | 지급액 | 지급 구분 | 지급 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체육 특기자 수석 | 체육특기자로 선발된 전공별 수석 | 1)계속지급조건: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 평균 3.0 이상<br>※계속지급조건 미충족시 지급종료 | 수업료 50% | 등록금 범위내 | 1년 |
| 체육 특기자 차석 | 체육특기자로 선발된 전공별 차석 | - | 수업료 50% | 등록금 범위내 | 1학기 |
| 편입생 장학 | 편입학전형으로 선발된 자 |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2.5 이상<br>※계속지급조건 미충족시 지급종료 | 100만원 | 등록금 범위내 | 1년 |
| 편입생 장학 (협약기관) | 대학 부설기관, 협약체결기관 등 협약기관에서 편입한 자 |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2.5 이상<br>※계속지급조건 미충족시 지급종료 | 수업료 50% | 등록금 범위내 | 1년 |
| 재외 국민 장학 |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자 | - | 정착장학금 100만원 | 등록금 범위내 | 1회 |
| | | | 생활관비 (4인실 기준) | 등록금 범위외 | 4년 |
| 서해 5도 장학 | 서해5도 전형으로 선발된 자 | - | 정착장학금 100만원 | 등록금 범위내 | 1회 |
| | | | 생활관비 (4인실 기준) | 등록금 범위외 | 4년 |
| 호서이음 장학금 | 본 대학과 협약(MOU)를 체결한 고교 출신의 입학생 중 추천자 | - | 등록금 50% | 등록금 범위내 | 1학기 |

## 2. 교내장학금: 재학생

| 장학 명칭 | 지급대상 | 지급기준 | 지급액 | 지급 구분 | 지급 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총장 장학 | 1. 총장A: 직전학기 성적 4.0 이상자 중 학장이 추천한 자 | ※배정인원: 직전학기 각 학부 및 학과(전공)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<br>※단, 편제개편 또는 모집중지 등으로 인하여 배정이 불가한 학과의 경우 유사학과(전신학과)와 통합하여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. 문화예술학부, 스포츠과학부 등 트랙으로 모집하는 학부는 필요한 경우 트랙별로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.<br>※직전학기 이수학점 15학점 미만 지급불가 | 수업료 전액 | 등록금 범위내 | 1학기 |
| | 2. 총장B: 직전학기 성적 3.5 이상자 중 학장이 추천한 자 | | 수업료 50% | 등록금 범위내 | 1학기 |
| | 3. 총장C: 직전학기 성적 3.0 이상자 중 학장이 추천한 자 | | 수업료 20% | 등록금 범위내 | 1학기 |
| 특별 장학 | 1.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가 있는 자<br>2. 경제사정 곤란자로서 품행이 바르다고 인정되는 자<br>3. 기관장/부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<br>4. 기타 지급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 | ※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<br>※ 시행 시 내부결재 | 일정금액 | 등록금 범위내/외 | 1학기 |
| 봉사 장학 | 교내 행정부서 및 학과 등에서 근로 및 봉사한 자<br>※ 근로/멘토/RE:born학습(선후배사랑학습공동체)/튜터/어깨동무/채플봉사/SNS홍보단/대학홍보단/기타봉사 등 | ※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<br>※ 시행 시 내부결재 | 일정금액 | 등록금 범위외 | 1학기 |
| 글로벌 리더 | 총학생회 및 기타 학생 자치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| 직전 학기 평균평점 2.5이상 | 일정금액 | 등록금 범위/외 | 1학기 |
| 교직원 장학 | 전임교원, 정규직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 | 1)직전 학기 평균평점 2.0이상<br>2)전임교원, 정규직원(무기계약직원 포함)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 또는 직계자녀가 본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본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| 등록금 전액 | 등록금 범위내 | 4년 |
| 체육 우수 장학 | 1등급: 전국규모대회 개인 및 단체 우승 입상자 | 1) 3개 이하 참가팀(개인) 대회의 경우 대회 규모와 관계없이 1위 입상만 인정하여 장학금 지급<br>2) 4개 이상 6개 이하 참가팀(개인) 대회의 경우 대회 규모와 관계없이 1위, 2위 입상만 인정하여 장학금 지급<br>※ 단, 전국규모대회의 정의 및 장학금 지급대상은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 | 수업료 전액 | 등록금 범위내 | 1학기 |
| | 2등급: 전국규모대회 개인 및 단체 2위 입상자 | | 수업료 60% | 등록금 범위내 | 1학기 |
| | 3등급: 전국규모대회 개인 및 단체 3위 입상자 | | 수업료 30% | 등록금 범위내 | 1학기 |
| 소망 장학 | 재학생 중 가계곤란자 | ※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0-5구간인 자<br>※ 시행 시 내부결재 | 일정금액 | 등록금 범위내 | 1학기 |
| 비전 장학 | 재적생 중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긴급한 경제사정으로 등록이 어려운 자 | ※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<br>※ 시행 시 내부결재 | 일정금액 | 등록금 범위내 | 1학기 |

| 장학 명칭 | 지급대상 | 지급기준 | 지급액 | 지급 구분 | 지급 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국가 유공자 장학 | 법률에 규정된 보훈대상자 본인 | 성적과 학점에 제한 없음 | 등록금전액 | 등록금 범위내 | 1학기 |
| | 법률에 규정된 보훈대상자의 자녀 | 직전학기 백분율 70점 이상 | 등록금 전액 (교비 50%/ 국고 50%) | | |
| 희망 장학 |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 |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장애등급 1급, 2급, 3급 등록증 소지자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(중증) 장애인 | 일정금액 | 등록금 범위내 | 1학기 |
| 가족 장학 | 본교 학부 및 대학원과정에 직계가족 2명 이상이 재학 중인 경우 | 가족 중 학부과정 학생 1인에게 지급<br>※ 시행 시 내부결재 | 일정금액 | 등록금 범위내 | 1학기 |
| 학군단 장학 | 학군단(ROTC) 학생 중 우수한 자 |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<br>※ 시행 시 내부결재 | 일정금액 | 등록금 범위내/외 | 1학기 |
| 벤처 프런 티어 장학 | (2018학년도 이전) 재학생 중 벤처프런티어로 선발된 자 | 계속지급조건: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3.5이상<br>※ 2학년 1학기 성적부터 적용<br>※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미만 또는 성적미달 시 다음학기 지급탈락<br>※ 2회 탈락 시 장학금 지급종료<br>※ 단, 벤처프런티어 운영위원회에서 구제될 경우 예외<br>※ 시행 시 내부결재 | 등록금전액 | 등록금 범위내 | 4년 |
| | | | 생활관비 (전액) | 등록금 범위외 | 4년 |
| | | | 해외연수비 | 등록금 범위외 | 1회 |
| | (2019학년도부터) 재학생 중 벤처프런티어로 선발된 자 | ※ 직전학기 평점평균 3.5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, 벤처프런티어로 선발된 자에게는 해당 프로그램 수료 시 장학금 지급<br>※ 시행 시 내부결재 | 일정금액 | 등록금 범위내 | 일정 기간 |
| 미래인재 (국가 고시) 장학 | 미래인재양성센터 국가고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 |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 | 일정금액 | 등록금 범위내/외 | 일정 기간 |
| 외국인 유학생 장학 | 외국인 유학생 중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|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 | 일정금액 | 등록금 범위내/외 | 1학기 |
| 북한 이탈 주민 장학 |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중 교육보호대상자 | 직전 학기 백분율 70점 이상 | 등록금 전액 (교비 50%/ 국고 50%) | 등록금 범위내 | 4년 |
| 국제화 장학 | 해외연수자(어학연수, 교환학생) 및 해외봉사자 |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 | 일정금액 | 등록금 범위외 | 1학기 |
| 재입학 장학 | 본교 재입학자 |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 | 일정금액 | 등록금 범위내 | 1학기 |
| 취업 준비 장학 | 취업준비 목적으로 졸업을 연기한 자(학기초과자) |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 | 일정금액 | 등록금 범위외 | 1학기 |

| 장학 명칭 | 지급대상 | 지급기준 | 지급액 | 지급 구분 | 지급 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실습 조교 장학 | 실습조교로 선발된 자 |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 | 일정금액 | 등록금 범위내/외 | 1학기 |
| 연구 조교 장학 | 연구조교로 선발된 자 |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 | 일정금액 | 등록금 범위내/외 | 1학기 |
| 현장 실습 장학 | 현장실습에 선발된 자 |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 | 일정금액 | 등록금 범위외 | 1학기 |
| 산학 융합 캠퍼스 장학 | 산학융합캠퍼스 소속학과 대상 | ※ 성적우수, 저소득층, 근로, 기타사유 등으로 선발된 자<br>※ 산학융합캠퍼스 장학금 지급은 해당 부서의 자체선발기준에 따른다. | 일정금액 | 등록금 범위내/외 | 1학기 |
| 미래 융합 대학 장학 | 미래융합대학에 입학 및 재학 중인 자 중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|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 | 일정금액 | 등록금 범위내/외 | 1학기 |
| CanDo 마일 리지 장학 | CanDo 마일리지를 일정 수준 이상 취득한 자 |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 | 일정금액 | 등록금 범위외 | 1학기 |
| 미래 인재 마일 리지 장학 | 고등학교 재학생 중 우리대학 고교 연계프로그램 또는 행사 등에 참여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한 자 |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 | 일정금액 | 등록금 범위외 | 1회 |
| 호서 동문 사랑 장학 | 재학생 중 부모 1인이 본교 졸업자인 경우 그 자녀 |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 | 일정금액 | 등록금 범위내 | 1회 |
| 기타 장학 | 학과 및 부서 등에 배정된 장학 예산에 대해 성적우수, 저소득, 근로, 자격증 취득, 수상 및 기타사유 등으로 선발된 자 |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 | 일정금액 | 등록금 범위내/외 | 일정 기간 |
| 재해 지원 장학금 | 각종 재난(대형화재, 지진,태풍등) 피해자 | ※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자<br>※ 시행 시 내부결재 | 일정금액 | 등록금 범위내 | 1학기 |
| 다전공 이수 지원 장학금 | 초과학기자 중 부·복수전공자 및 마이크로디그리 전공자 | - 초과학기자 중 부·복수전공자<br>- 초과학기자 중 마이크로디그리전공자<br>※ 시행 시 내부결재 | 일정금액 | 등록금 범위내 | 1학기 |
| 사업단 장학금 | 사업단 각종 프로그램 참여자 (별도기준) | - 해당 부서에서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<br>※ 시행 시 내부결재 | 일정금액 | 등록금 범위외 | 1학기 |